

양기탁 선생 국채보상운동기금 횡령누명사건



윤경로
한성대학교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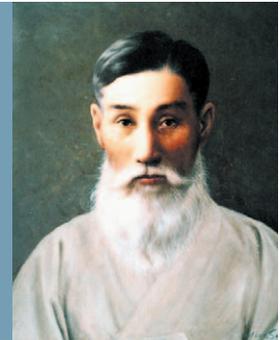
전 인류사에서 강자가 약자를 엮어매어 고통을 가한 예는 허다하다. 전근대사회 때에는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흔히 “네 죄를 내가 알렸다”는 식으로 약자를 울무에 묶어 사건을 날조, 조작, 과장시켜 형장의 이슬로 내친 사례를 역사 속에서 흔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진입한 이후, 즉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정은 다소 진전되었다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법적 근거와 재판 절차를 거치는 근대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합법성을 가장한 통치기구에 불과했으니 그 한 예를 우리는 일제 통감부시기 야기되었던 이른바 국채보상기금 ‘횡령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익히 알려진 대로 1904년 한일의정서 조인(2.23)을 전후로 일제의 고문정치(顧問政治)가 획책되면서 화폐정리, 금융공황 구제, 도로 항만시설 확충 등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차관(借款)을 도입, 원금만 1,650만 원(현 가치추정, 5천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이중 일부를 상환했으나 1907년 현재 나라 빛이 1,300여만 원(현 가치 추정, 3천9백억 원)에 이르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해 2월 대구에서 서상돈(徐相敦) 등이 중심되어 “2천만 동포가 석 달만 연초를 끊고 한 달에 20전씩만 모으면 1,300만원이 될 터이니 국채 갚는 것이 어찌 걱정이라”(국채보상 취지문)는, 말하자면 10년 전(1997년) IMF 금융위기 때 전개되었던 ‘금 모으기운동’과 같은 범국민적 애국운동이었다. 대구 지방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국규모의 운동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민족 언론 매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즉 『황성신문』, 『제국신문(帝國新聞)』, 『만세보』 등이 국채보상기금 캠페인에 앞장 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당대 반일민족 언론지로 명성이 높았던 『대한매일신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으며, 그 중심에 바로 양기탁(梁起鐸) 선생이 있었다.

통감부 측은 국채보상운동 초기에는 별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특별 광고문이 게재되면서 전국에서 의연금이 답지하여 운동을 전개한 지 3개월 만에 모금액이 230만원(현 가치 추정, 690억 원)을 넘어섰고 운동에 참가한 인원 또한 4만여 명에 이를 만큼 폭발적인 호응을 보였다. 이렇듯 전 국민적 호응과 참여도가 높아지자 통감부 측은 긴장하였다. 따라서 이 운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공작에 나섰고 이에 따라 통감부 측이 획책한 사건이 이른바 <양기탁 국채보상기금 횡령사건>이었다.

통감부 측이 양기탁을 ‘횡령사건’으로 엮어낸 의도와 내용은 이렇다. 첫째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전국규모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의 불길을 일시에 잠재우기 위한 데 있었다. 둘째는 차체에 평소부터 눈에 가시같이 생각해오던 반일민족언론지인 『대한매일신보』와 항일언론의 활동 선두에 서있는 양기탁을 잡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금품 횡령이라는 죄명을 씌워 부도덕한 인물로 매도시켜 그의 반일활동을 옥죄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동원된 것이 합법성을 가장한 재판제도였다.

통감부 측이 양기탁을 '횡령사건'으로 엮어맨 의도와 내용은 이렇다.
 첫째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전국규모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의 불길을 일시에 잠재우기 위한 데 있었다.
 둘째는 차제에 평소부터 눈에 가시같이 생각해오던
 반일민족언론지인 『대한매일신보』와
 항일언론의 활동 선두에 서있는 양기탁을 잠기 위해서였다.



양기탁 선생

이 사건을 맡은 통감부 경시총감 마루야마(丸山重信)는 1908년 7월 4일 그동안 국채보상지원금융합소에 접수된 기금이 14만3천여만에 달하는데 이를 61,042원 332전이라고 허위 축소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또한 6만1천원 의연금 가운데 3만원을 인천에 있는 홍콩상해은행(Hongkong & Shanghai Bank)에 예금했다가 3월말과 4월에 2만5천원과 5천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명분으로 그달 12일 밤 체포, 구속하여 18일 경성지방 재판소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 곧 '의연금횡령사건'을 친일어용신문인 『경성일보』,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 일진회 기관지인 『국민신보』에 대서특필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찬물을 뿌렸다. 이에 격분한 『대한매일신보』는 25일자 신문에 “이는 전혀 사실무근의 설”이라는 반박 글을 실었지만 사태는 쉽게 반전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곧 재판에 회부되었고 첫 공판이 1908년 8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9시 30분에 개정된 1차 공판 재판장은 요코타(横田定雄)였고 피고 측 변호사는 한국인 이용상(李容相)이었다. 먼저 검사 이토(伊藤)의 논고가 있었다. 그 요지는 이렇다.

“피고는 광무11년(1907년) 3월 『대한매일신보』에 특별광고를 게재하여 기금요청을 한 후 국채보상지원금융합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재무(財務)가 되어 1908년 4월 말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접수된 기금이 132,982원 32전에 달하는데 동년 5월 30일자 신문에 총액이 61,042원 332전이라는 요지의 허위 축소 광고를 게재하고 차액 71,939원 98전 8리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형법 595조 절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횡령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검사 기소 논고 이후 동년 9월 3일 2차 공판을 시작으로 9월 29일까지 5차에 걸친 공판이 계속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즉 허위사실을 강요하는 재판부 측과 이에 당당하게 맞선 피고 측(양기탁, 베텔, 이용상 변호사 등) 사이에 열띤 공방이 진행되었다. 논쟁의 핵심은 피고 양기탁이 횡령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검사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5차 공판 최종심에서 재판장은 결국 “피고 양기탁은 무죄다”라는 최종판결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이로 인한 타격은 적지 않았다. 양기탁이 법정 진술에서 말하고 있듯 “내가 14만원을 횡령했다는 검사의 논고가 모든 신문에 보도되었으므로 무죄방면이 되어도 나의 입장은 난처하다. 애초부터 누가 나에게 대해 이런 중상모략을 했는지 알고 싶다”(4차 공판 진술, The Seoul Press, 1908. 9. 26)는 말과 같이 이로 인해 양기탁 개인이 입은 타격은 물론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반일민족 애국인사들이 받은 상처와 타격은 심대했음을 우리는 이후 일제의 국권강점 추진과 105인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